

5. 都市環境整備區域變更指定(案) 意見聽取 結果報告書

2003. 11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0월 8일 · 종로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24일
 다. 상정일자 : 제13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 제1차(2003.11. 3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당 초	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대	3,571.0	위치 변경없는 면적 조정
변 경	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외 42필지	3,567.8	

-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당 초	도로	청진동 178-1번지 외 18필지	543.0	위치 변경없는 면적 조정
변 경	도로	청진동 178-1번지 외 18필지	601.0	

○ 건축계획

구분	위 치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 시설(㎡)	건폐율 (%)	연면적(㎡) (용적률%)	층수 (높이m)	주된 용도
당초	청진동 188번지 일대	3,028.0	543.0	50이하	24,224.0 (800이하)	21/- (86)	업무 시설
변경	청진동 188번지 외 42필지	2,966.8	601.0	60이하	36,000이하 (820이하)	지상20층/지하 7층 이하 (86이하)	업무 시설

3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4. 意見 採 擇 : 없 음

5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